

『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1년 12월 12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1년 12월 12일

라. 상정일자 : 2011년 12월 20일

제166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세무과장 황 필 섭

나. 제안이유

- 비료생산업의 등록 등에 관한 시·도지사 권한의 시·군·구
이양 등을 내용으로 하는 「비료관리법」이 일부개정(법률 제8591호,
2007. 8. 3 공포, 2008. 8. 4 시행)되어 도 업무 이관에 따른 수수료
요율표를 정비하여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업무 이관에 따른 제증명 수수료 항목 신설(별표1)
 - 비료생산업 등록(신설) : 1건 20,000원
 - 비료수입업 신고(신설) : 1건 20,000원

라. 참고사항

- 「비료관리법」 제11조, 같은 법 제12조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7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백 승 결

○ 본 개정 조례안은

- 「비료관리법」 제11조 및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생산업 등록 및 비료수입업 신고 업무가 도에서 시로 이관되면서 제증명 수수료 항목을 신설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비료관리법 개정에 따른 수수료 항목(별표1) 중 비료생산업 등록(1건 20,000원), 비료수입업 신고(1건 20,000원)을 신설하는 것임.

○ 검토결과

- 본 개정 조례안은 「비료관리법」의 개정으로 도에서 시군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라 조례로 징수하는 수수료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 등에 저촉 사항 없음
- 비료생산업 등록(신설) 및 비료수입업 신고(신설)업무가 2008. 8. 4. 이관된 사무로 「구미시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」를 개정하지 않고 수수료를 징수한 것으로, 향후 이관된 사무는 행정변화 여건에 맞는 시기적절한 조례개정이 이루어 져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